

# 학 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건학이념)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본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2011.8.10 개정)

② 제1항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2011.8.10 신설, 2014.5.14 개정)

1. 도덕적 지도자(Ethical Leader)
2. 창조적 지식인(Creative Thinker)
3. 진취적 도전자(Young Challenger)

제3조(용어의 정의)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학·석사통합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2012.9.7 개정)

## 제 2 장 편 제

제4조(대학 및 학부) ① 본교에는 불교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찰사법대학, 경영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약학대학, 미래융합대학, AI융합학부, 다르마칼리지, 융합교육원, 불교문화대학, 인문대학, 과학기술대학, 사회대학, 상경대학, 사범교육대학, 간호대학,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파라미타칼리지를 둔다.(2006.12.18, 2007.7.4, 2008.9.1, 2010.10.25, 2013.5.9, 2013.9.12, 2014.2.5, 2016.2.25., 2016.5.16., 2016.6.23., 2016.8.22., 2016.9.12., 2019.3.28., 2019.4.30., 2021.1.21., 2021.3.23., 2021.4.21. 개정)

② 각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2006.12.18 신설, 2009.12.2 개정)

③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학부(이하 ‘독립학부’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21.3.23. 신설)

④ 각 대학 및 학부에 설치한 학과(전공)의 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2006.6.1, 2006.12.18, 2007.7.4, 2007.12.11, 2008.9.1, 2009.12.2, 2010.10.25, 2011.8.10, 2012.2.13, 2012.4.2, 2012.9.7, 2013.2.7., 2013.5.9., 2013.9.12., 2014.5.14, 2014.10.16., 2015.8.27., 2016.2.25., 2016.4.12., 2016.6.23., 2016.8.22., 2017.4.3., 2018.2.26., 2018.3.30., 2019.7.16., 2020.2.18., 2020.3.27. 개정, 2021.3.23.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4.21., 2021.5.6. 개정)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전공)를 둘 수 있다. 계약학과(전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10.25. 신설, 2021.3.23. 제4항에서 이동)

제4조의2(학사과정의 전공이수방법) 학사과정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받아 융합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0.1.22. 본조신설)

제5조(대학원) ①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인 영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인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찰사법대학원, 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을 둔다.(2006.6.1, 2006.12.18, 2007.7.4, 2008.11.14, 2009.1.15, 2010.10.25., 2012.2.13., 2015.11.2., 2021.5.6. 개정)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두고,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두며, 각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2006.6.1, 2006.10.9, 2006.12.18, 2007.12.11, 2008.5.23, 2008.9.1, 2008.11.14, 2009.1.15, 2009.4.15, 2009.12.2, 2010.2.2, 2010.5.20, 2010.10.25, 2012.2.13, 2012.4.2, 2012.5.17, 2012.9.7, 2013.2.7, 2013.2.28, 2013.5.9, 2013.9.12, 2014.2.5., 2014.5.14., 2014.10.16, 2015.2.26, 2015.8.27., 2015.11.2, 2015.12.30. 2016.2.25., 2016.6.23., 2016.8.22., 2016.9.12., 2016.10.31, 2016.12.12., 2017.1.20., 2017.5.15., 2017.6.16., 2017.9.25., 2018.2.26., 2018.7.10., 2018.10.29., 2019.3.28., 2019.4.30. 2019.7.16., 2019.11.4., 2020.1.22., 2020.2.12., 2020.5.1., 2020.7.14., 2020.12.10., 2021.1.24., 2021.3.23., 2021.4.21., 2021.5.6. 개정)

③ 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간에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전공)를 둘 수 있다. 계약학과(전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10.25 신설)

제5조의1<2014.2.5 삭제>

제5조의2(다르마칼리지) 본교의 다르마칼리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4.2.5 신설)

제5조의3(파라미타칼리지) 본교의 파라미타칼리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4.2.5. 신설)

제5조의4(융합교육원) 본교의 융합교육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6.5.16. 신설, 2019.4.30. 개정)

제6조(부속교육기관) 본교의 부속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 개정)

제7조(사무조직) 본교의 사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 개정)

제8조(특별기구) 본교의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6.10.9 개정)

제9조(부속기관) 본교의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 개정)

제10조(연구기관) 본교의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 개정)

제11조(의료원) 본교에 의료원을 두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기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008.11.14 신설, 2013.5.9 개정)

제13조(교직원) ① 본교에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등 교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및 조교를 두며 그 정원은 따로 정한다. (2012.9.7., 2019.8.8. 개정)

② 제1항의 교원이외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019.8.8. 개정)

③ 교원은 대학(원), 학부(전공), 학과 또는 부속교육기관, 연구기관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7.7.4., 2010.10.25, 2014.2.5 개정)

④ 본교의 각 대학원, 대학, 부속교육기관, 사무조직, 부속기관 및 연구기관에는 각각 대학원장, 학장, 부서 및 기관의 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교원(강사, 겸임교원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교수시간은 학년도별 30주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1인당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 담당 등의 개인 사정이나 학과 형편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9.8.8. 개정)

②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9.8.8. 신설)

### 제 3 장 학사 일반

제15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과 제2학기과로 나눈다.

② 제1항의 일반학기 외에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학부(학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2021.1.24. 신설)

제1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2018.2.26. 신설)

②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2018.2.26. 개정)

③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2015.8.27., 2018.2.26. 개정)

④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34조(학점부여기준)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교과별 수업일수를 조정할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2018.2.26. 신설, 2020.1.22. 개정)

⑤ 법정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으로 매 학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2015.8.27. 신설, 2018.2.26. 개정)

제17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 및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5월 8일)

3. 법정공휴일 (2015.8.27 개정)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1항의 정기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인 경우에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18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한의예과, 의예과는 2년(4학기)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4학기), 학·석사통합과정은 6년(12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2012.9.7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4년(8학기), 학·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4년과 석사과정 4년을 합산하여 8년(16학기)으로 한다. 다만, 학·석사통합과정에서 제52조 제2항의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2012.9.7. 신설, 2021.5.6.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7 개정)

1. 학사과정 : 1년

2. 석사과정 : 6개월

3. 학·석사통합과정 : 1년 6개월

4. 석·박사통합과정 : 1년

⑤ 석사과정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1년 이상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단기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2020.12.10. 신설)

제19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한의예과 및 의예과는 4년(8학기), 한의학과 및 의학과는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장애학생의 경우 등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4.2.5., 2015.8.27., 2020.12.10. 개정)

② 한의학과, 의학과로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 이수 후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014.5.14, 2015.8.27 개정)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대학원의 재학연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7 신설)

#### 제 4 장 입 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20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기는 매 학기 초 3주 이내로 한다.

제21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약학과는 4학기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2012.9.7 개정)

②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7 개정)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 전임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소속 학과의 대학원 과정에는 입학할 수 없다.(2021.1.24. 개정)

⑤ 2002학년도이후 교육대학원에 신·증설된 전공에는 현직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전공(표시과목이 없는 전공)의 경우는 현직교직원이 아닌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⑥ 학·연·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국내 산업체나 연구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입학지원시 본교와 학·연·산협동과정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정 학생정원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비재직자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내신에 따라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24조(합격취소 및 입학취소) ① 합격 또는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의

학적 상태(합격, 입학 허가, 재학, 휴학, 제적, 졸업)와 상관없이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2013.2.7., 2021.3.23. 개정)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2021.3.23. 신설)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2021.3.23. 신설)
3.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2021.3.23. 신설)
4.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입학자격 또는 모집요강의 전형별 지원 자격에 미달함이 사후 확인된 경우(2021.3.23.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5. 관계 법령 및 모집요강에 명시된 대입 지원방법 위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021.3.23.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6. 입학사정에 사용한 일체서류에 결함이 있거나 주요사항을 누락한 경우(2021.3.23. 제3호에서 이동)
7.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필요하지 않은 경우(2021.3.23.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② 심의절차, 사후처리 등 합격취소 및 입학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3.2.7 신설)

제25조(정원의 입학)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학사과정,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2013.9.12 신설)

④ 정원의 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③ 본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협약체결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정원외로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2009.12.2 신설)

④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학사 편입학할 수 있다.

⑤ 일반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2006.12.18 개정)

1. 석·박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석·박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
3.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3학기이상 이수한 자(2017.9.25. 신설)

⑥ 전문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2006.12.18 신설)

1. 석·박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석·박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

⑦ 특수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석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학군 교류협정에 의한 국방대학교 수료자 포함)

⑧ 타 대학에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

⑨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및 석사과정으로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2012.9.7 신설)

⑩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단,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2010.2.2 개정)

③ 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신설, 2015.8.27 개정)

④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⑤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⑥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으며,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여 석사과정에 진입한 경우와 의학전문대학원 제적자에 대하여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2.9.7 신설)

⑦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장 등록

제28조(등록) ①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되고 학적을 상실한다.

② 학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사과정은 8학기, 일반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은 4학기, 학석사통합과정은 12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8학기(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2012.9.7 개정)

③ 대학원 석·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한 자의 경우 필요시 연구등록 또는 수료생등록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2019.4.30. 신설, 2021.1.24. 개정)

④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는 수료시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속하여 최대 2학기까지 연구등록하고,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을 필요하지 않은 자는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없으며,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2010.10.25., 2019.4.30. 개정)

제29조(등록금) ① 등록금의 금액과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공시하며, 세부 사항은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13.2.28 개정)

② <2013.2.28 삭제>

③ <2013.2.28 삭제>

④ <2013.2.28 삭제>

⑤ <2013.2.28 삭제>

제30조(등록금의 반환) ① <2013.2.28 삭제>

② <2013.2.28 삭제>

③ <2013.2.28 삭제>

## 제 6 장 교과와 이수

제31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표는 학기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제32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하며 각 학과(전공)별 이수기준 등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사회봉사활동, 현장실습,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9.1.15. 개정)

④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원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인증제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2007.12.11 신설, 2013.2.28 개정)

1. 학과(부)에서는 일반교육과정과 병행하여 국내의 교육과정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인증을 받는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부)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교육과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공명을 부여할 수 있다.

3. 인증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교수와 학생이 함께 관심분야에 대한 진로를 설계하고 전공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방형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2007.12.11. 신설)

⑦ 교육과정 편성 또는 개편 시 사회수요, 핵심역량 및 학습성과 측정 결과, 강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2018.1.25. 신설)

⑧ 학과(전공)에서는 전공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본교 전공교육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9.11.4. 신설)

⑨ 미래수요를 반영한 최선의 특성화 학문 분야 개발을 통해 모듈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2020.12.10. 신설)

제3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마다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하지 않은 자는 그 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 및 취소 등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점부여기준)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과목과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 30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8학점 이내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은 21학점 이내, 졸업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대학은 24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등의 경우에는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일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최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2006.12.18 개정)

② 전문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다음 각호와 같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계절수업 등으로 학기당 최대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 2007.12.11, 2008.5.23, 2012.9.7., 2013.2.28., 2021.4.21. 개정)

1. 영상대학원 : 최대 12학점

2. 경영전문대학원 : 최대 13학점

③ 특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2학점 이상 추가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2021.1.24. 개정)

④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7조(타 대학 등과의 교류)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과정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학위과정의 연계)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과목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등과 같이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7 개정)

제39조(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② 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전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7 장 시험과 성적

제40조(시험) ① 시험은 학기당 2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6.10.31. 개정)

③ 총장이 따로 정한 과목은 소정의 시험에 의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41조(성적)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6.10.31. 개정)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기한다.

등급	A <sup>+</sup>	A <sup>o</sup>	B <sup>+</sup>	B <sup>o</sup>	C <sup>+</sup>	C <sup>o</sup>	D <sup>+</sup>	D <sup>o</sup>	F	P,W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불계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① 학사과정에서는 “D<sup>o</sup>” “등급이상과 “P”를, 대학원과정에서는 “C<sup>o</sup>” “등급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사과정의 학점 인정과 취소 기준을 따른다. (2015.8.27 개정)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③ F학점은 과락으로 평점에는 가산하나, 수료학점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제 8 장 전공결정, 전과, 복수전공 등(2020.1.22. 개정)

제43조(전공결정) 대학,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1학년 2학기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개정)

제44조(전과) 학사과정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전공)로 옮기는 것은 전입받는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사범 계열은 별도로 정함, <삭제>)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7.12.11, 2010.2.2. 개정)

제44조의2(대학원생의 학과 소속 변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 소속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2020.12.10. 개정)

1. 학제 개편, 지도교수의 소속 변경,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등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2020.12.10. 개정)
2. 적성 등의 사유로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2020.12.10. 신설)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0.12.10. 제2호에서 이동)  
(2019.7.16. 본조신설)

제45조(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① 학사과정 학생은 본인 소속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 외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하 “복수전공”이라 한다)
2.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계전공”이라 한다)(2020.1.22. 개정)
3.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융합전공”이라 한다)(2020.1.22. 신설)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이하 “학생설계전공”이라 한다)(2020.1.22. 제3호에서 이동)

② 복수전공, 캠퍼스간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7.12.11., 2020.1.22. 개정)

(2020.1.22. 제목개정)

제46조(부전공) 학사과정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인 소속과 다른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7.1.20. 개정)

## 제 9 장 휴학·복학·제적 및 자퇴

제47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정기간이 아니더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4.2.5 개정)

② 휴학은 1회에 학사과정은 2학기, 대학원과정은 1학기, 통산하여 학사과정인 경우 6학기(의학과 및 한의학과는 8학기)를,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은 4학기, 영상대학원 석·박사과정과 경영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를,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8학기(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4학기)를,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와 임신·출산 및 육아,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9.4.15, 2009.12.2, 2011.1.24., 2012.9.7, 2014.2.5 개정)

③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내신에 따라 총장이 제적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제3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5호의 해당자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2020.12.10. 개정)

1.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국내 다른 대학(교)에 이중 입학한 자
4.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단, 서울캠퍼스만 적용) (2013.2.7., 2018.2.26., 2020.1.22. 개정)
6. 한의예과, 한의학과, 의예과, 의학과 학생으로서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015.8.27 개정)
7.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27조 제2항에 의해 재입학한 후 다시 성적경고 통산 2회를 받은 자(단, 서울캠퍼스만 적용)(2015.8.27., 2018.2.26. 개정)
8. 징계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은 자
9. 한의학과,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 유급을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 (2010.10.25 신설, 2012.9.7 개정)
10. <삭제, 2018.2.26.>
11. 미래융합대학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입학생으로서 재학 중 재직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자 (단,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재직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제적을 유예하며, 이 기간은 교무학생처장, 교무학생지원팀장이 참여하는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2017.1.20. 신설, 2018.10.29., 2019.4.30., 2019.9.16. 개정)

## 제 10 장 졸업과 학위수여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① 학년별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전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과정을 모두 마치고, 총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신입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009.4.15, 2009.12.2, 2010.5.20, 2012.2.13., 2013.5.9., 2015.11.2., 2016.6.23., 2017.1.20., 2017.2.20., 2018.2.26., 2020.7.14., 2020.12.10., 2021.4.21. 개정)

대학 및 학부(과)	졸업학점	학년별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			
		1 (3)	2 (4)	3 (5)	4 (6)
사회과학대학(광고홍보학과 제외), 예술대학(스포츠문화학과), 미래융합대학	120	30	60	90	120
불교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광고홍보학과), 경찰사범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컴퓨터공학전공(심화과정), 정보통신공학전공(심화과정) 제외), 사범대학, 예술대학(스포츠문화학과 제외) 불교문화대학, 인문대학, 과학기술대학, 사회대학, 상경대학, 사범교육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 제외)	130	33	65	98	130
간호학과, 공과대학(컴퓨터공학전공(심화과정), 정보통신공학전공(심화과정))	140	35	70	105	140
한의학과, 의학과 (한의예과, 의예과)	160	40 (40)	80 (80)	120	160
약학과	171	49	95	141	171

※ ( )학년은 약학과에 해당

② 제1항의 수료 요건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총장이 별도로 정한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특정 외국어에 관한 소정의 시험 및 강의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06.12.18 개정)
2.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을 포함한다)에 통과하여야 한다.
3. <2016.8.22. 삭제>

③ 서울캠퍼스의 경우, 교직과정 및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다더라도 해당 과정의 이수를 마치기 위하여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다.(2009.4.15 신설, 2010.10.25 개정)

④ 경주캠퍼스의 경우, 졸업 예정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다라도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10.25 신설)

제52조(대학원과정의 수료와 졸업) ①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을 위해서는 이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위논문 제출에 상응하는 대체수단을 정할 수 있다.(2019.7.16. 개정)

② 전문대학원의 수료와 졸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5.23, 2011.1.24, 2012.9.7, 2013.2.28, 2013.5.9, 2014.2.5 개정)

1. 영상대학원

가.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석사과정은 36학점 이상(멀티미디어학과, 영화영상제작학과 콘텐츠비즈니스전공(중문)은 30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2021.4.21. 개정)

나. 졸업을 위해서는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또는 졸업작품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위논문 또는 졸업작품 제출에 상응하는 대체수단을 정할 수 있다.(2021.4.21. 개정)

2. 경영전문대학원 :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전문석사과정은 45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의학전문대학원

가. 석사과정 : 총 평점평균이 2.0이상으로서 전문석사과정은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개설된 전공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나. 학·석사통합과정 : 총 28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평균은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각각 2.0 이상으로서 학사과정은 120학점 이상, 전문석사과정은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개설된 전공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 졸업을 위해서는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학·석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나목에서 정한 학사학위 수여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원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위의 종류) ① 본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별표 3, 대학원과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대학원 협동과정 이수자는 이수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6.6.1, 2006.10.9, 2006.12.18, 2007.12.11, 2008.5.23, 2008.9.1, 2008.11.14, 2009.4.15, 2009.12.2, 2010.2.2, 2010.5.20, 2010.10.25, 2012.2.13, 2012.4.2, 2012.5.17, 2012.9.7, 2013.2.7, 2013.2.28, 2013.5.9, 2013.9.12, 2014.2.5, 2014.5.14, 2014.10.16., 2015.2.26, 2015.8.27, 2015.11.2, 2016.2.25., 2016.6.23., 2016.8.22., 2016.9.12., 2016.10.31., 2016.12.12., 2017.1.20., 2017.4.3., 2017.5.15., 2017.9.25., 2018.2.26., 2018.3.30., 2018.7.10., 2018.10.29., 2019.3.28., 2019.7.16., 2019.8.8., 2019.11.4., 2020.1.22., 2020.2.12., 2020.3.27., 2020.5.1., 2020.7.14., 2020.12.10., 2021.1.21., 2021.1.24., 2021.3.23., 2021.4.21., 2021.5.6. 개정)

② 전문대학원에 개설한 학술학위 석·박사과정의 학사운영은 일반대학원에 준한다. (2006.12.18 신설)

제54조(학위의 수여) 학위는 매년 봄(2월) 또는 가을(8월)에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 개정)

제55조(명예박사학위) 학술 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시간제등록학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시간제등록학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수강생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본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졸업에 필요한 기준 학점에 달한 경우 본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3.5.9 개정)

제57조(공동·복수학위수여) 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복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3.2.7 신설)

제58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학위수여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며, 이 학칙과 따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0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 법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급여절차와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62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징계는 견책,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다만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3조(학생회) ① 학생은 학생자치역량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해 학생회 등의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학생지도) 학생 및 학생자치단체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제 12 장 공개강좌와 특수학생 등

제66조(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시간제등록학생) ① 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총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2013.5.9 신설)

③ 시간제등록학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연구생) ①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은 연구생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와 시험을 실시하며, 입학 후 소정의 청강료를 부과한다.

③ 연구생은 해당 연구과목에 한하여 수업에 출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그 연구과목에 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본교 대학원 연구생이 과정 이수 후 해당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대학원장은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연구생의 이수 학점을 대학원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21.1.24. 신설)

⑤ 연구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21.1.24. 제4항에서 이동)

제68조의2(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이 교내활동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장애학생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1.1.24 본조 신설)

## 제 13 장 위원회

제69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에 교무위원회(이 조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은 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포상 및 학생상별에 관한 사항
4. 교수회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5. 예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0조(대학원위원회) ①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 조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대학(원)장과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대학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2007.12.11, 2010.10.25 개정)

③ <2007.12.11 삭제>

④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2006.12.18 개정)

1. 대학원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원 및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는 본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2012.2.13, 2013.2.7 개정)

⑥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으로 한다.(2006.12.18 개정)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4 장 교수회

제71조(구성) 본교에 전체 교수회와 각 대학별 대학교수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72조(소집과 개최)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대학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3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수업과 연구에 관한 사항
3. 졸업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지도에 관한 사항
7. 총장 또는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4조(특별위원회)필요한 경우, 전체교수회 및 대학교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15 장 보칙

제75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개정하여 공포한다.

② 개정된 학칙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세칙)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6.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중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1항의 수료에 필요한 최저평점평균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졸업학점이 130학점으로 감소된 학과의 기존 재적생은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졸업학점을 130학점으로 적용한다.

②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2006.6.1. 2010.10.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에 전공선택한 자로서 2010년 8월말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전공)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7학년도 1학년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각각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대학(원)명칭과 학과(전공)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정·복지대학 법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2006.10.9 개정)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12.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폐지에 따라 기존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경영대학원 재적생은 종전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과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재적생은 2007학년도에 한하여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학칙 개정(2006.6.1)에 따라 200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산업대학원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산업대학원 기존 재적생은 2006년 6월 1일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2. 인쇄화상전공 재적생은 2007년 3월 1일부터 언론정보산업대학원 인쇄출판학과 인쇄화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인쇄화상전공 이외 전공 재적생은 본교 타 특수대학원의 유사학과(전공)으로 소속 변경할 수 있다.

③ 제54조(학위의 수여), 제70조(대학원위원회) 개정학칙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7.7.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언론정보대학원은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7.12.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6조(학위수여) <별표2>의 개정에 따른 서울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대학) <별표1>과 제56조(학위수여)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문과대학 ①철학과, ②윤리문화학과, ③독어독문학과, ④영어영문학전공, ⑤영어통·번역전공, 이과대학 ⑥생명과학과, 사회과학대학 ⑦광고홍보학과, 경영대학 ⑧국제통상학전공, 생명자원과학대학 ⑨식물생명공학과, ⑩산림자원학과, ⑪식품공학과, ⑫식품자원경제학과, 공과대학 ⑬전자공학과, ⑭생명·화학공학과, 정보산업대학 ⑮정보통신공학과, ⑯컴퓨터공학과, ⑰산업시스템공학과, 영상미디어학부 ⑱영화영상전공, ⑲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⑳공연예술학부에 입학 또는 전공 선택한 자로서 2011년 8월말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 학과(전공) 명칭을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8학년도 1학년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각각 문과대학 ①철학전공, ②윤리문화학전공, ③독어문화학전공, ④영어문학전공, ⑤영어·통번역학전공, 생명과학대학 ⑥생명과학전공, 영상미디어대학 ⑦광고홍보학과, 사회과학대학 ⑧국제통상학전공, 생명과학대학 ⑨식물생명공학과, ⑩환경생태공학전공, ⑪식품공학전공, ⑫식품산업시스템전공, 공과대학 ⑬전자공학전공, ⑭화학·생물공학과, ⑮정보통신공학전공, ⑯컴퓨터공학전공, ⑰산업시스템공학과, 영상미디어대학 ⑱영화영상학과, ⑲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⑳연극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08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단과대학·학부·학과·전공 명칭변경 및 소속변경, 단과대학 신설, 야간강좌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가. 기존 나노생명과학부 및 이공계열 재적생은 입학당시 모집단위내에서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학과 및 2006학년도 법정계열(법학과 제외) 신입생부터 사회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다. 나노소재화학전공, 안전환경시스템공학전공, 친환경에너지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국제관계학전공, 전자상거래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나노소재화학과,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에너지·환경대학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라. 기존 야간강좌 학부 복학생이 전공을 선택할 경우, 해당학년의 편제에 따라 주간의 동일 학부 및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야간강좌에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3. 사회과학대학원 법학과 폐지에 따라 기존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53조의 <별표4>에서 행정대학원의 세부전공 학위명칭 변경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08. 2. 28 개정)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5. 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36조 제2항 1호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52조의 1호 영화영상학과의 수료학점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북한학전공의 학위명칭(북한학학사, 북한학석사, 북한학박사), 협동과정<석사과정>인 정보나노기술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인 국어교육학과와 역사교육학과는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제53조(학위의 종류)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기획과정의 명칭 및 학위는 2008년 9월에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 문화학과정과 문화공학과정은 2007년 3월부터 신설한 것으로 본다.

⑤ 식물생명공학전공(이학사), 환경생태공학전공(이학사), 의생명공학전공(공학사)의 개정 학위명칭은 200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8.9.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제2항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바이오학부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2008.11.14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 15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9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사회과학대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사회과학대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은 2009학년도 3월1일부터 신설 산업경영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산업경영대학원으로 소속 변경된 사회과학대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은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 12.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 및 <별표3>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2.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5조(대학원) <별표2>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및 <별표4>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2009학년도이전 입학생의 소속 학과(전공)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3.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④ 제47조(휴학)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2. 2 개정)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대학원) <별표2>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및 <별표4>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2009학년도이전 입학생의 소속 학과(전공)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3.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0. 10.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 제4항 및 제5조 제4항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 제28조(등록), 제29조(등록금)의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1학기 등록자부터 적용한다.
- ③ 제51조 제4항은 2010년 가을(8월)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한다.
- ④ 제53조 별표4에서 정한 무역학과 박사학위명은 201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2010년 8월 졸업생까지는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 ⑤ 제5조 별표2 및 제53조 별표4 개정 규정 중 경영전문대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⑥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학부·학과·전공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 가. 미술학부에는 불교미술학과, 미술학과를 두며, 기존 미술학부 및 미술학과 재적생은 세부 실기전공에 따라 불교미술학과, 미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나. 컴퓨터공학부 학부명칭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컴퓨터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재적생 소속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 다.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재적생은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 라. 철학·논술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1. 1.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2조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이론 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영화학 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2011. 5.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1조 및 제51조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 제53조 별표3은 개정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2011. 8. 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3항 별표 1의 개정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2.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1조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대학 졸업학점 변경은 2011학년도 신입생, 2012학년도 2학년 외국인 편입생, 2013학년도 일반 및 학사편입생부터 적용한다.
2.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졸업학점 변경은 2012학년도 신입생, 2013학년도 2학년 외국인 편입생, 2014학년도 일반 및 학사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제3항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2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학부·학과·전공 명칭 변경, 신설,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 가.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학과 재적생은 불교문화대학 불교미술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나.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미술학과 재적생은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다.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 문화예술철학전공은 폐설된 철학·논술 전공과 별도의 전공으로 보며, 기존 인문학부 철학·논술 전공 및 철학전공 재적생 중 2012학년도 이후 복학생은 인문학부 내 전공 중 재적하고자 하는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 라. 바이오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전공 명칭 및 학위는 2012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마. 이공학부는 2012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 바. 이공계열 나노소재화학학과 재적생은 이공학부 신소재화학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사. 이공계열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안전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2012. 4.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 별표1과 제53조 별표3 개정내용은 2013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5조 별표2의 개정내용은 2012년 3월부터, 제53조 별표 4의 개정내용은 201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2. 5. 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별표2 개정내용은 기존 재적생도 일괄 적용한다.

#### 부 칙(2012. 9.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53조 별표3 및 별표4의 경과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3은 2012년 8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2. 별표4의 일반대학원 및 국제정보대학원은 2012년 8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3. 별표4의 영상대학원은 2012년 2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서울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2> 및 <별표4>의 개정 학칙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1> 및 <별표3>의 개정 학칙은 2013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조경학과 조경학사는 2013년 2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24조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3. 2.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별표2>의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학전공의 일반대학원 이전에 따른 경과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학전공 재적생은 일반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재적생으로 변경한다.

2.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학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의 재적생은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재적생으로 변경한다.

부 칙(2013. 5. 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제1항 개정내용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53조 별표4의 개정내용 중 미술학과 박사학위는 2008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제56조(시간제등록학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개정내용은 2012학년도 1학기 수강생부터 적용한다.

⑤ 제67조(시간제등록학생) 제2항 개정내용은 2013학년도 1학기 시간제 등록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9.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제3항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학부·학과 명칭 변경, 통합, 신설,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가. 불교문화대학 불교미술학부 재적생은 인문과학계열 미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나.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재적생은 인문과학계열 미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 과학기술대학 정보통계학과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응용통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라. 과학기술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마.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및 공학대학 컴퓨터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사. 에너지환경대학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 개정내용 중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학위명은 2013학년도 가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 2. 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다르마칼리지 신설 및 교양교육원 폐설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 승인 시점인 2014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 제1항 및 제52조의 제2항은 기존 재적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제47조 창업 휴학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하며, 임신 출산 및 육아휴학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적용한다.

④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개정내용은 사회복지학과 2013학년도 신입생 및 불교사회복지학과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 5. 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개정내용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3> 중 약학과,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학위명 개정내용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대학원) <별표2>와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 개정내용 중 문화예술대학원 관련 내용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제19조(재학연한)제2항 개정내용은 기존 재적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④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제2항제3호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10.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에 따른 서울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학부 및 전자전기공학부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연극학부 및 영화영상학과 학위명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3. 일반대학원 연극학과 학위명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4.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개정 내용은 2015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문화예술대학원 개정내용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3학년도 및 2014학년도 신입생은 구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개정 사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테크노경영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기존 재적생의 학사관리대학은 경영계열로 본다.

3. 제5조(대학원)〈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별표4〉의 불교풍수문화학과에 대한 사항은 생사문화학과 풍수지리전공 재학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5. 2.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별표2 및 제53조 별표4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문화학과 한국음악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5. 8.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캠퍼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및 스포츠문화학과 개정내용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경주캠퍼스 스포츠과학과 및 행정경찰공공학과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1.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5조(대학원) 〈별표2〉와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서울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 학칙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행정대학원 개정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51조의 개정내용은 서울캠퍼스 스포츠과학과 재적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5. 12. 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개정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4.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개정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경주캠퍼스 단과대학·학과 명칭변경 및 단과대학

소속변경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학 및 학부) 제3항 <별표1>, 제53조(학위의 종류) 제1항 <별표3> 개정에 따른 각 호의 경주캠퍼스 단과대학·학과 명칭변경 및 단과대학 소속변경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 인문과학계열에서 인문대학으로 명칭변경
2. 자연과학계열에서 과학기술대학으로 명칭변경
3. 사회과학계열에서 사회대학으로 명칭변경
4. 경영계열에서 상경대학으로 명칭변경
5. 자연과학계열 정보통신공학과, 기계부품시스템공학과에서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로 소속 변경 및 명칭변경
6. 사회과학계열 글로벌경제통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에서 상경대학 글로벌경제통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로 소속변경

(부칙개정 2016.9.12.)

부 칙(2016.8.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 <별표3> 개정내용 중 웹설계및응용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실감미디어공학전공,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전공, 스마트관광전공, 정보미디어경영전공 개정 사항은 201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9.12.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1조(성적)의 개정 내용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제5조(대학원) 제2항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제1항 <별표4>의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학과 및 전공 개·폐설 관련 내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경찰사범대학원 개정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한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6.12.12.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학칙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0.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학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2.20.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의 개정 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3.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학생의 동의를 조건으로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 중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상담학과의 명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 내용은 2018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경찰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 치안과학융합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관련 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5.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내용 중 문화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미술경영전공 관련 내용은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6.16.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의 내용 중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문화예술대학원 실용예술학과 뷰티아트케어전공과 관련된 내용은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5.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6.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학생의 동의를 조건으로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5조(대학원) <별표2>와 제53조(학위 및 학위명) <별표4>의 개정내용 중 행정대학원과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관련 내용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50조(제적)의 개정 내용은 2017학년도 2학기 제적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④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의 졸업학점 개정내용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학생의 동의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8.7.10.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0조(제적)의 개정 내용은 2017학년도 미래융합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5.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아동심리치료학과 폐지, 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신설에 관한 내용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아동심리치료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며,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9.4.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28조(등록) 제3항은 2019학년도 2학기 등록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는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44조의2(대학원생의 학과 소속 변경)과 관련하여 학교 정책에 따른 재학생의 소속변경시, 변경 전 소속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5조(대학원) <별표2>의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 협동과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은 2020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5조(대학원) <별표2>의 법무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④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명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2019년 가을 학위 수여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53조(학위의 종류) 제1항 별표3의 개정내용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9.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한문불전문역학과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영전문대학원 인사조직컨설팅 MBA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1.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중 융합전공 관련 사항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별표2> 및 <별표4>의 특수대학원 전공명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2.12. 개정, 2020.5.1. 부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중 융합전공 관련 사항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별표2> 및 <별표4> 개정사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2.18.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 내용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본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5.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일반대학원 과학치안학과, 사회과학대학원 스포츠과학과에 관한 내용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대학원 윤리문화학과 폐지에 따른 기존 재적생의 소속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20.7.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제1항 개정 내용은 2021년 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대학원 통계학과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12.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의 <별표3> 융합전공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대학원)의 <별표2> 및 제53조(학위명)의 <별표4>의 개정 내용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19조(재학연한) 제1항의 의예과 재학연한 개정 내용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적용한다.

④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의 멀티미디어공학과 졸업학점 개정 내용은 2022년 봄 졸업자부터, 정보통신공

학전공(일반과정) 졸업학점 개정 내용은 2023년 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4조(대학 및 학부)의 <별표1> 및 <별표3>의 서울캠퍼스 개정 내용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본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1.1.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의 <별표2> 및 제53조(학위명)의 <별표4>의 개정 사항은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제약바이오산업학과 관련 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일로부터 즉시 적용한다.

부 칙 (2021.3.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서울캠퍼스 대학원 편제 관련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경주캠퍼스 대학원 편제 관련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4.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및 제53조 <별표3>의 개정 내용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학생 본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1.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 중 간호대학 신설과 간호학과의 단과대학 변경 개정내용은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재적생의 소속은 간호대학 간호학과로 변경한다.

2.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 중 불교문화대학 불교아동보육학과의 재적생은 학과의 요청 및 학생 본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사회대학 아동청소년교육학과로 소속 변경한다.

3.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에 따라 모집중지되는 한국음악과,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며, 모집중지 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관련 조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 및 제52조의 개정 내용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5.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은 2022학년도 간호학과 및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대학원) <별표2> 서울캠퍼스 대학원 편제 관련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별표1> 학사과정 학과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학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불교 대학	불교학부 문화재학과	63 15	불교학부	68	불교학부	68	불교학부	68	불교학부 불교사회복지학과	68 15
	계	78	계	68	계	68	계	68	계	83
문과 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30 40 17 30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30 40 17 30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30 40 17 30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30 40 17 30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30 40 17 30
	계	263	계	263	계	263	계	263	계	263
이과 대학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계	172	계	172	계	172	계	172	계	172
법과 대학	법학과	129	법학과	129	법학과	129	법학과	129	법학과	129
	계	129	계	129	계	129	계	129	계	129
사회 과학 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경제학과	84	경제학과	84	경제학과	84	경제학과	84	경제학과	84
	국제통상학과	68	국제통상학과	68	국제통상학과	68	국제통상학과	68	국제통상학과	68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학전공	72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학전공	7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학전공	7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학전공	7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학전공	73
	식품산업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25 50 15	식품산업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26 50 15	식품산업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26 50 15	식품산업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26 50 15	식품산업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26 50 15
	계	409	계	411	계	411	계	411	계	396

대학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경찰사범대학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69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69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69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69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69
	계	69	계	69	계	69	계	69	계	69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120 84 66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120 84 66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120 84 66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120 84 66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120 84 66
	계	270	계	270	계	270	계	270	계	270
바이오시스템대학*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2 37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계	173	계	176	계	176	계	176	계	176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62	전자전기공학부	162	전자전기공학부	162	전자전기공학부	162	전자전기공학부	172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5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5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5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5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0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2 67 55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4 67 55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4 67 55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4 67 55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54 67 55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58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66 45 40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76 45 40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76 45 40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76 45 40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76 40 40
	계	720	계	734	계	734	계	734	계	734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29 29 30 29 29 30 36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30 30 30 30 30 30 38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30 30 30 30 30 30 38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30 30 30 30 30 30 38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계	212	계	218	계	218	계	218	계	218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60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60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60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60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60

대학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40 22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40 22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40 22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40 22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40 22
	계	172	계	172	계	172	계	172	계	172
약학 대학*	약학과	30	약학과	30	약학과	30	약학과	30	약학과	30
	계	30	계	30	계	30	계	30	계	30
미래 융합 대학	(융합보안학과)	1	(융합보안학과)	1	(융합보안학과)	1	(융합보안학과)	1	(치안과학융합학과)	1
	(사회복지상담학과)	1	(사회복지상담학과)	1	(사회복지상담학과)	1	(사회복지상담학과)	1	(사회복지상담학과)	1
	(글로벌무역학과)	1	(글로벌무역학과)	1	(글로벌무역학과)	1	(글로벌무역학과)	1	(글로벌무역학과)	1
	계	3	계	3	계	3	계	3	계	3
AI융합 학부	AI융합학부	78								
서울 캠퍼스	합계	2778	합계	2715	합계	2715	합계	2715	합계	2715

※ \*단과대학은 바이오메디캠퍼스에 둔다.

※ ( )는 야간강좌 개설 전공임

대학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불교 문화 대학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불교문화콘텐츠전공 명상심리상담학과	30 20 20	불교학부 명상심리상담학과 불교아동보육학과 한국음악과	43 20 35 19	불교학부 명상심리상담학과 불교아동보육학과 한국음악과	43 20 35 21	불교학부 불교아동보육학과 한국음악과	60 35 23	불교학부 불교아동보육학과 한국음악과	60 35 25
	계	70	계	117	계	119	계	118	계	120
인문 대학	웹문예학과 인문콘텐츠학부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35 35 40	인문콘텐츠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33 35 40	인문콘텐츠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33 35 40	인문콘텐츠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33 35 40	국어국문학과 국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35 35 40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45 30 45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45 30 45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45 30 45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45 30 45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45 30 45
	디자인미술학과	65	미술학과	55	미술학과	55	미술학과	55	미술학과	55
	스포츠건강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스포츠의학전공	50 20	스포츠과학과	45	스포츠과학과	45	스포츠과학과	45	스포츠과학과	45
	계	365	계	328	계	328	계	328	계	330
	과학 기술 대학	바이오제약공학과	50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바이오제약공학전공	35 36 35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바이오제약공학전공	38 38 35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바이오제약공학전공	40 40 35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바이오제약공학전공
창의융합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에너지전기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스마트안전공학부 안전보건전공 소방방재전공		45 65 40 40 20	창의융합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에너지전기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45 65 48 47	창의융합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에너지전기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45 65 48 47	창의융합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45 65 48 45	창의융합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원격·에너지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45 65 45 45
컴퓨터공학과		70	ICT·빅데이터학부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30 65	ICT·빅데이터학부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30 65	ICT·빅데이터학부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32 65	ICT·빅데이터학부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35 65
조경·정원디자인학부 조경전공 정원디자인전공		40	조경학과	50	조경학과	50	조경학과	50	조경학과	50
계		370	계	456	계	461	계	465	계	465
사회 대학		행정·경찰공공학부 공공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교육학과	100 55 25	행정·경찰공공학부 공공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과	100 55	행정·경찰공공학부 공공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과	100 55	행정·경찰공공학부 공공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과	100 55	행정·경찰공공학과 사회복지학과



대학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계	180	계	155	계	155	계	155	계	155
상경 대학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70	경영학전공	70	경영학전공	70	경영학전공	70	경영학전공	70
	회계세무학전공	40	회계세무학전공	40	회계학전공	40	회계학전공	40	회계학전공	40
	정보경영학전공	40	정보경영학전공	40	정보경영학전공	40	정보경영학전공	40	정보경영학전공	40
	항공서비스무역학과	60	글로벌경제통상학부	95	글로벌경제통상학부	95	글로벌경제통상학부	95	글로벌경제통상학부	95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136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136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134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134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130
	호텔관광경영학전공		호텔관광경영학전공		호텔관광경영학전공		호텔관광경영학전공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계	346	계	381	계	379	계	379	계	375	
사범 교육 대학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가정교육과	22	가정교육과	22	가정교육과	22	가정교육과	22	가정교육과	22
	수학교육과	28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계	80	계	92	계	92	계	92	계	92
간호 대학	간호학과	85	간호학과	70						
	보건의료정보학과 뷰티메디컬학과	30 30								
계	145	계	70							
한의과 대학	한의학과 한의학과	72 <2>	한의학과 한의학과	72 <2>	한의학과 한의학과	72 <2>	한의학과 한의학과	72 <2>	한의학과 한의학과	72 <2>
	계	72 <2>	계	72 <2>	계	72 <2>	계	72 <2>	계	72 <2>
의과 대학	의예과 의학과	49 <49>	의예과 의학과	49 <49>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49 <49> 70	의예과 간호학과	49 70	의예과 간호학과	49 70
	계	49 <49>	계	119 <49>	계	119 <49>	계	119	계	119
파라미 타칼리 지	자유전공학부	77	자유전공학부	34	자유전공학부	29	자유전공학부	26	자유전공학부	26
	계	77	계	34	계	29	계	26	계	26
경주 캠퍼스	합계	1,754 <121>	합계	1,754 <121>	합계	1,754 <121>	합계	1,754 <72>	합계	1,754 <72>

<별표2> 대학원별 학과편성과 입학정원 현황

◇ 일반대학원  
- 서울캠퍼스

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석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29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북한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한문불전번역학과			505	
	자연과학계 (10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반도체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가정학과, 수학교육학과, 약학과				
	공학계 (16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화학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기술창업학과, 인공지능학과, 자율사물지능학과				
	예체능계 (4학과)	연극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영화영상학과				
	의학계 (2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학과간 협동 과정 (15)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기관)		참여학과 및 기관
		공학	의료기기산업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학과, 약학과, 의학과
		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자연과학	한의생명과학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의학과, 바이오학부
		인문사회	국제다문화학과	문과대학		다르마칼리지,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법학과, 역사교육학과, 교육학과
		공학	재생의공학과	재생의공학융합연구원		의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생명과학과, 의학과
		공학	융합표준학과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약학과
		공학	핀테크블록체인학과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예체능	스포츠과학 융합학과	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 통계학과, 의학과, 글로벌무역학과, 광고홍보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공학	지식재산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융합보안학과, 경영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약학과
		인문사회	상담코칭학과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공학	스마트혁신소재 부품공학과	공과대학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인문사회		과학치안학과	미래융합대학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인문사회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불교학술원	불교학과, 한문불전번역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학	VR·AR 테크놀로지학과	공과대학	멀티미디어공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자연과학	제약바이오산업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생명과학과, 의학과, 법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			
석사 계	5계열	61학과, 15학과간 협동과정			505	
박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29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북한학과, 경제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한문불전번역학과			337	
	자연과학계 (10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반도체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가정학과, 수학교육학과, 약학과				
	공학계 (15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과, 기술창업학과, 인공지능학과, 자율사물지능학과	
예체능계 (4학과)		연극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영화영상학과	
의학계 (2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학과간 협동 과정 (11)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기관) 참여학과 및 기관
	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인문 사회	국제다문화학과	문과대학 다르마칼리지,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법학과, 역사교육학과, 교육학과
	공학	재생의공학과	재생의공학융합연구원 의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생명과학과, 의학과
	공학	의료기기산업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학과, 약학과, 의학과
	공학	융합표준학과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약학과
	공학	핀테크블록 체인학과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예체능	스포츠과학 융합학과	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 통계학과, 의학과, 글로벌무역학과, 광고홍보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인문 사회	상담코칭학과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예체능	뷰티아트케어학과	예술대학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미술학부, 법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공학	스마트혁신소재 부품공학과	공과대학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인문 사회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불교학술원 불교학과, 한문불전번역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계	5계열	60학과, 11학과간 협동과정	337
서울캠퍼스 총계			842

- 경주캠퍼스

과정	계열	학과			입학정원	
석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10학과)	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유아교육과			75	
	자연과학계 (7학과)	화학, 통계학과,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생명공학과, 가정학과, 간호학과				
	공학계 (4학과)	컴퓨터과학과, 안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예체능계 (1학과)	미술학과				
	학과간 협동과 정 (3)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인문사회	테크노경영	상경대학		정보경영학과, 경영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인문사회	국제비즈니스	상경대학		경제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 회계학, 정보경영학과
인문사회	아동·청소년 심리상담학과	불교문화대학	불교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1)	한국원자력연구원					
석사계	4계열	22학과, 3학과간 협동과정, 1학·연·산 협동과정			75	
박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8학과)	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유아교육과			25	
	자연과학계 (4학과)	화학,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가정학과				
	공학계 (4학과)	컴퓨터과학과, 안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학과간 협동과 정 (3)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인문사회	테크노경영	상경대학	정보경영학과, 경영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인문사회	국제비즈니스	상경대학	경제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 회계학, 정보경영학과	
	인문사회	아동·청소년 심리상담학과	불교문화대학	불교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1)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계	3계열	16학과, 3학과간 협동과정, 1학·연·산 협동과정			25
경주캠퍼스 스총계					100

◇ 전문대학원  
- 서울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정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 콘텐츠 시나리오	80
		영화영상제작학과	기획/프로듀싱전공, 연출/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 콘텐츠비즈니스전공(중문)	
		멀티미디어학과	XR테크놀로지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미디어아트전공	
		공연예술학과	연기연출전공, 예술경영전공	
	박사학위 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 콘텐츠 시나리오	20
		영화영상제작학과	기획/프로듀싱전공, 연출/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	
		멀티미디어학과	XR테크놀로지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미디어아트전공	
계				100
경영전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Dongguk Global MBA		70
		Dongguk MBA		
		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MBA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약학 MBA			
계				70

- 경주캠퍼스

구분		과정	입학정원
의학전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의무석사과정	-
계			-

※ 교육학계 전환(의전원→의대)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중지

◇ 특수대학원  
- 서울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정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74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생사문화산업학과	생사문화산업전공	
		명상심리상담학과	명상심리상담전공	
		융합요가학과	융합요가학전공	
		차문화콘텐츠학과	차문화콘텐츠전공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지방자치전공, 감사행정전공	100
		안보·북한학과	외교·안보전공, 북한·통일전공, 방위사업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청소년전공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글로벌무역학과	글로벌무역전공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교육학과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HRD·성과코칭전공, 다문화융합교육전공, 스포츠지도전공, 한국어교육전공, AI 융합교육전공	109
		교과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언론정보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텐츠전공	30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인쇄출판학과	출판잡지전공, 인쇄화상전공	
문화예술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140
		연극예술학과	연극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음악전공, 민화전공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실용예술학과	실용음악전공, 뷰티아트케어전공, 도시정원전공	
국제정보보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블록체인전공, 인공지능보안전공	70
		사이버포렌식학과	사이버포렌식전공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법학과	법률실무전공, 자산관리법무전공, 손해사정법무전공, 정보·기술법무전공, 문화·뷰티산업법무전공, 지식재산법무전공, 탐정(PIA)법무전공, 행정법무전공	50
경찰사법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경찰사법학과	경찰학전공, 산업보안학전공	70
		범죄심리학과	범죄심리학전공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전공	
		비상안전학과	비상안전학전공	
교육서비스 과학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미래학습과학과	교육데이터사이언스전공, 학습디자인·에듀테크전공	30
		교육서비스융합학과	인간발달·재활전공, 시니어교육서비스전공	
계			643	

- 경주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정원
불교문화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50
		불교예술학과	국악전공, 불교미술전공, 선화민화전공	
		생사문화학과	생사문화전공	
		불교풍수문화학과	불교풍수문화전공	
		불교상담학과	불교상담전공	
		다도학과	다도학전공	
사회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행정학과	정책개발전공, 지방자치전공	40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전공, 정치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전공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사회심리상담학과	상담심리학전공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25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전공	
계				115

〈별표3〉 학사과정 학위명

- 서울캠퍼스

대학	학부(과)	수여학위
불교대학	불교학부 문화재학과	문학사 문화재학사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이과대학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식품산업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치학사 행정학사 북한학사 경제학사 국제통상학사 문학사 언론학사 경제학사 광고홍보학사 사회복지학사
경찰사범대학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경찰학사 범죄학사 범죄학사 범죄학사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경영학사 경영학사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이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대학	학부(과)	수여학위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공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이학사 가정학사 체육학사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연극학사 뮤지컬학사 영화학사 체육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미래융합대학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융합보안학사 사회복지학사 무역학사



- 경주캠퍼스

대 학	학 부(과)	수 여 학 위
불교문화대학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불교문화콘텐츠전공 명상심리상담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인문대학	웹문예학과 인문콘텐츠학부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디자인미술학과 스포츠건강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스포츠의학전공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디자인미술학사  체육학사 체육학사
과학기술대학	바이오제약공학과 창의융합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에너지·전기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스마트안전공학부 안전보건전공 소방방재전공 컴퓨터공학과 조경·정원디자인학부 조경전공 정원디자인전공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조경학사 조경학사
사회대학	행정·경찰공공학부 공공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이동청소년교육학과	행정학사 경찰학사 문학사 문학사
상경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세무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항공서비스무역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경영학사 경영학사 경영학사 경영학사  관광경영학사 관광경영학사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	교육학사

대 학	학 부(과)	수 여 학 위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학사 이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보건의료정보학과 뷰티메디컬학과	간호학사 보건학사 보건학사
한외과대학	한외과학과	한외과학사
외과대학	외과학과	외과학사

- 연계전공

구분	연계전공	수여학위
서울캠퍼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학사
	디자인공학	공학사
	커뮤니케이션관리과정	커뮤니케이션학사
	문화기획과정	문화기획학사
	문화학과과정	문화학사
	문화공학과과정	문화공학사
	소비자학	소비자학사
	공통사회	
	공통과학	
	TESOL	문학사
	경제, 사회, 범죄학	범죄학사
	국제교류협력	문학사
	다문화사회	문학사
	식품영양학	이학사
	창업학	창업학사
	융합소프트웨어	융합소프트웨어학사
	융합지식재산	융합지식재산학사
	불교생사철학	불교생사철학사
	예술융복합	예술융복합학사
	과학수사	과학수사학사
	건설정보소프트웨어	건설정보융합소프트웨어학사
	로봇융합소프트웨어	로봇융합소프트웨어학사
	문화예술소프트웨어	문화예술융합소프트웨어학사
	범죄수사소프트웨어	범죄수사학사
	산업정보소프트웨어	산업정보융합소프트웨어학사
	생명정보소프트웨어	생명정보융합소프트웨어학사
	입법코디네이터	입법코디네이터학사
	서베이리서치	서베이리서치학사
	창의적사회디자인	창의적사회디자인학사

구분	연계전공	수여학위
	AI영어교육	문학사
	데이터사이언스소프트웨어	데이터사이언스소프트웨어학사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학사
경주캠퍼스	e-비즈니스	경영학사
	정보처리	공학사
	웹설계및응용전공	공학사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공학사
	실감미디어공학전공	공학사
	글로벌서비스비즈니스전공	경영학사
	스마트관광전공	관광경영학사
	정보미디어경영전공	경영학사
	문화콘텐츠기획전공	문화콘텐츠학사
	국제비서학전공	국제비서학사

- 융합전공

구분	융합전공	수여학위
서울캠퍼스	공공인재	공공인재융합학사
	인텔리전스로봇	인텔리전스로봇융합공학사
경주캠퍼스	재난대응서비스	재난대응서비스융합학사

<별표4> 대학원과정 학위명

◇ 일반대학원

- 서울캠퍼스

계열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인문사회계	불교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인도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일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미술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역사교육학과	역사교육학석사	역사교육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인문사회계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석사	경찰학박사
			범죄학석사	범죄학박사
			법심리학석사	법심리학박사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박사
		북한학과	북한학석사	북한학박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언론학석사	언론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국제통상학과 (국제경영·비교문화전공) (무역실무·운송전공)	무역학석사	무역학박사
		(국제통상·지역연구전공) (무역이론·금융전공)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지리학과	지리학석사	지리학박사 지리교육학박사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석사	광고홍보학박사	
한문불전번역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자연과학계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계열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반도체과학과 수학교육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가정학과 약학과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교육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가정학석사 약학석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교육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약학박사
공학계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기술창업학과 스마트안전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자율사물지능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건축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의생명공학석사 공학석사 기술창업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의생명공학박사 공학박사 기술창업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예체능계	연극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영화영상학과	연극학석사 미술학석사 체육학석사 영화학석사	연극학박사 미술학박사 체육학박사 영화학박사
의학계	한의학과 의학과	한의학석사 의학석사	한의학박사 의학박사

- 경주캠퍼스

계열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인문사회계	불교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한문학과	문학석사	-
	사학과	문학석사	-
	고고미술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석사	호텔관광경영학박사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자연과학계	화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통계학과	이학석사	-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조경학과	조경학석사	조경학박사
	생명공학과	이학석사	-
	가정학과	가정학석사	이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공학계	컴퓨터과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원자력·에너지시스템 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예체능계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

◇ 전문대학원  
- 서울캠퍼스

과 정	학과	전공(세부분야)	학위명	
영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전공	문화예술학석사(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전공	문학석사(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학과	기획/프로듀싱전공 연출/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 콘텐츠비즈니스전공(중문)	영화영상제작석사(기획/프로듀싱) 영화영상제작석사(연출/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석사 영화영상제작석사(콘텐츠비즈니스)	
		멀티미디어학과	XR테크놀로지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미디어아트전공	공학석사(XR테크놀로지) 디자인학석사(콘텐츠디자인) 음악석사(컴퓨터음악) 융합예술석사(미디어아트)
	공연예술학과		연기연출전공	공연예술전문석사(연기연출)
		예술경영전공	공연예술전문석사(예술경영)	
	영상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전공	문화예술학박사(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전공	문학박사(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학과		기획/프로듀싱전공 연출/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	영화영상제작박사(기획/프로듀싱) 영화영상제작박사(연출/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박사	
		멀티미디어학과	XR테크놀로지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미디어아트전공	공학박사(XR테크놀로지) 디자인학박사(콘텐츠디자인) 음악박사(컴퓨터음악 및 작곡) 융합예술박사(미디어아트)
과 정			학위명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Dongguk Global MBA		경영학석사(Global MBA)
	Dongguk MBA	경영학석사(Dongguk MBA - HR/Leadership)		
		경영학석사(Dongguk MBA - Operations)		
		경영학석사(Dongguk MBA - Marketing)		
		경영학석사(Dongguk MBA - Finance)		
경영학석사(Dongguk MBA - Accounting)				
경영학석사(Dongguk MBA - MIS)				
경영학석사(Dongguk MBA - Entrepreneurship)				
경영학석사(Dongguk MBA - Pharmacy)				
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MBA		경영학석사(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MBA)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경영학석사(의료기기혁신경영 MBA)		
약학 MBA		경영학석사(약학 MBA)		

- 경주캠퍼스

과 정		학위명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의무석사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의무석사
	학·석사통합과정*	이학사

\*제52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경우에 수여하는 학위

◇ 특수대학원  
- 서울캠퍼스

구 분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문학석사(불교)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생사문화산업학과	생사문화산업전공	문학석사(생사문화산업)
	명상심리상담학과	명상심리상담전공	문학석사(명상심리상담)
	융합요가학과	융합요가학전공	문학석사(융합요가)
	차문화콘텐츠학과	차문화콘텐츠전공	문학석사(차문화콘텐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지방자치전공, 감사행정전공	행정학석사(행정, 정책, 지방자치, 감사행정)
	안보·북한학과	외교·안보전공, 북한·통일전공, 방위사업전공	행정학석사(외교·안보, 북한·통일, 방위사업)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청소년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청소년)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부동산학석사(부동산)
	글로벌무역학과	글로벌무역전공	글로벌무역학석사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HRD·성과코칭전공, 다문화융합교육전공, 스포츠지도전공, 한국어교육전공, AI융합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교육행정·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HRD·성과코칭전공, 다문화융합교육전공, 스포츠지도전공, 한국어교육전공, AI융합교육전공)
	교과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텐츠전공	언론학석사(신문방송) 언론학석사(디지털컨텐츠)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광고홍보학석사(광고홍보)
	인쇄출판학과	출판잡지전공 인쇄화상전공	문학석사(출판잡지) 공학석사(인쇄화상)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문학석사(시전공) 문학석사(소설·드라마전공)
	연극예술학과	연극예술전공	예술학석사(연극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예술학석사(불교미술) 예술학석사(문화재)



구 분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한국음악전공 민화전공	음악학석사(한국음악) 예술학석사(민화)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예술경영학석사(공연예술경영, 미술경영)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예술치료학석사(미술치료)
	실용예술학과	실용음악전공	실용음악학 석사
뷰티아트케어전공 도시정원전공		향장학석사(뷰티아트케어) 예술학석사(도시정원)	
국제정보보호 대학원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블록체인전공 인공지능보안전공	정보보호학석사 정보보호학석사(블록체인) 정보보호학석사(인공지능보안전공)
	사이버포렌식학과	사이버포렌식전공	사이버포렌식학석사
법무대학원	법학과	법률실무전공 자산관리법무전공 손해사정법무전공 정보·기술법무전공 문화·뷰티산업법무전공 지식재산권법전공 탐정(PIA)법무전공 행정법무전공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경찰사법대학원	경찰사법학과	경찰학전공 산업보안학전공	경찰학석사 산업보안학석사
	범죄심리학과	범죄심리학전공	범죄학석사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전공	범죄학석사
	비상안전학과	비상안전학전공	비상안전학석사
교육서비스 과학대학원	미래학습과학과	교육데이터사이언스전공 학습디자인·에듀테크전공	교육학석사(교육데이터사이언스전공) 교육학석사(학습디자인·에듀테크전공)
	교육서비스융합학과	인간발달·재활전공 시니어교육서비스전공	교육학석사(인간발달·재활전공) 교육학석사(시니어교육서비스전공)

- 경주캠퍼스

구 분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문학석사(불교학) 문학석사(선학)
	불교예술학과	국악전공 불교미술전공 선화·민화전공	음악학석사(국악) 미술학석사(불교미술) 미술학석사(선화·민화)
	생사문화학과	생사문화전공	문학석사(생사문화)
	불교풍수문화학과	불교풍수문화전공	문학석사(불교풍수문화)
	불교상담학과	불교상담전공	문학석사(불교상담)

구분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다도학과	다도학전공	다도학석사(다도학)
사회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정책개발전공, 지방자치전공	행정학석사(정책개발, 지방자치)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전공, 정치학전공	정치학석사(국제관계, 정치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전공	체육학석사(스포츠과학)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부동산학석사(부동산)
	사회심리상담학과	상담심리학전공	상담심리학석사(상담심리)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경영)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전공	경영학석사(경영)